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1-06

부 산 고 등 법 원

창 원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(창원)2024누11641 취득세 부과처분
원고, 항소인	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◯◯시장
제 1 심 판 결	창원지방법원 2024. 11. 21. 선고 2022구합567 판결
변 론 종 결	2025. 6. 27.
판 결 선 고	2025. 9. 1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10. 10. 원고에게 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합계 2,984,02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1-06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1행의 "(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'이 사건 토지'라 하고, 개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리와 지번만 표시한다)"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(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'이 사건 토지'라 하고, 개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리와 지번만 표시하되 2022. 6. 14.자 합병 전 지번을 기준으로 한다)』

○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다. 피고는 과세감면 토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2022. 5. 3.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한 결과, 이 사건 토지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이장과의 통화를 통해 2021년에는 경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,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호증, 을 제1, 2, 6 내지 9, 11, 1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』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, 14행의 "주변 토지"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○○시 H 답 413㎡ 및 I 답 920㎡(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'이 사건 주변 토지'라 하고, 개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리와 지번만 표시하되 2022. 6. 14.자 합병 전 지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1-06

을 기준으로 한다)』

2. 추가 판단

가. 주장 요지

원고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지상에 식품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므로,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'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'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21. 6. 16. 및 2021. 12. 29. 이 사건 주변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J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(K, D 각 토지) 지상에 식품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도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2, 5 내지 8호증, 을 제4,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,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할 것이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, 위와 같은 건축설계도가 작성된 것 이외에는 그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점(오히려 위 건축설계도에 합병 전 지번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,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), ② 피고가 2022. 10. 31. 이 사건 주변 토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1-06

H 토지에는 배롱나무 6주와 도로변 울타리목이, I 토지에는 일부 진입로 및 도로변 울타리목이 존재할 뿐 이 사건 주변 토지 또한 여전히 나대지 상태였던 점, ③ 원고는 영농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열대과일 재배 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코로나19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유예기간 내 영농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○○

판사 최○○

판사 서○○